

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	필기전형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장애유형 및 정도		필기시험		비고	
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		
지체 장애인	상지	공통	·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·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·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
	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 ·[선택형 시험]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4~6급	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별도시험실 배정*좌석간격 조정)	-	기존 1~6급
뇌병변 장애인	공통		·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·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·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	·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	-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·[선택형 시험]답안지 대필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4~6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-	
시각 장애인	공통		·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	-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좋은눈의 시력이 0.04이하인 사람	·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	-	기존 1~2급
		·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-	기존 3급 2호
		·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	-	기존 3급 1,2호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 4급 2호
		·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-	-	기존 4,5급 1호
		·좋은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-	-	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이하
·나쁜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-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 5급 2호, 6급	
·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	·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-		
청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서면자료 제공 ·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	기존 2~6급

*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
 *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

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

면접전형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비고
지체 장애인	상지	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전담도우미 지원 ·관련서식 확대 제공	기존 1~6급
	하지	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전담도우미 지원	
뇌병변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전담도우미 지원 ·관련서식 확대 제공	기존 1~6급
시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전담도우미 지원 ·관련서식 확대 제공	기존 1~6급
청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의사전달보조요원(수화통역사 등) ·관련자료 등 서면제공	기존 2~6급

* 면접시험 편의지원은 필기시험 편의지원 시 제출한 증명서 혹은 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